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20
----------	------------

제안연월일 : 2025년 12월 18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은 강연 등을 위한 외부 강사를 초빙함에 있어 검증에 필요 한 서류 및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검증을 벗어나는 정보도 포함될 수 있는바,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범위를 교육감 재량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관리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제3호)
- 교육감은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이때 증빙서류를 생략하거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신설)
- 교육감은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 부적합한 외부 강사를 제외할 수 있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함(안 제7항제5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전단에 “교육감은” 을 신설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안 제7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외하여야 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 · 이용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관리 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2. (생략)</p> <p>3. 강연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p> <p>4. · 5. (생략)</p> <p>제7조(외부 강사 등 섭외 · 초청)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u>외부 강사</u> 등을 섭외 · 초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p> <p><u>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1. · 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4조(관리 계획의 수립 · 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3. · 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제7조(외부 강사 등 섭외 · 초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교육감은 외부강사</u>-----</p> <p>-----.</p> <p><u><후단 삭제></u></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u>교육감은 제2항의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u> 다만, <u>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u></p> <p>④ <u>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 · 이용의 목적</u></p>

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증 절차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대상자를 강연 등 섭외·초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 -----

-----제외한다.

부 칙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강연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연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강연, 강의, 행사 등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연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지역 특성이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연 등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강연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

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기본 방향 및 목표
2.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전략 및 세부 과제
3. 분야 또는 주제별 전문 강사 등 초청·섭외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강연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요조사 등 실시) ①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의 강연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연 등이 종료된 이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른 강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정보 제공 및 홍보) 교육감은 적극적인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강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외부 강사 등 섭외·초청) ① 교육감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연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또는 주제에 부합하는 외부 강사 등을 섭외·초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외부 강사 등을 섭외·초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 또는 주제에 부합하는 전문자격, 학력, 경력, 실적 등 증빙

2. 그 밖에 교육감이 외부 강사 등 섭외·초청 대상자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의 검증 절차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대상을 강연 등 섭외·초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강연 등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강연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